

APEC기후센터 종합감사 결과(요약)

【 2020. 11. 26.(목) / 감사담당관 】

1. 감사실시 개요

□ 목적

- 우리나라 및 아태지역 이상기후 등 연구개발 고유사업, 예산집행, 인사운용 등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
- 문제점 등에 대해서 적정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·개선함으로써 산하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

2. 근거

- 「기상청 자체감사규정」 (기상청 훈령 제961호, 2019. 12. 24.)
- 2020년 자체감사 운영 기본계획(감사담당관-788, 2020. 2. 21.)

3. 대상기관 / 범위

- APEC 기후센터 최근 3년간(2017~2020년) 수행한 업무 전반

4. 감사기간 및 인원

- 감사기간: 2020. 10. 19.(월)~10. 30.(금)
- 감사인원: 감사담당관 외 5명

5. 중점사항

- 기관 설립 목적 및 해당 연구사업 적정성 등 연구기관 운영 분야
- 유사과제 중복성 및 불요불급 과제 검토 등 선정·평가 분야
- 연구장비 등 연구기자재 구매·활용 실태 등 연구비 집행 분야
- 기후예측 선도 기술 개발 실태 등 연구개발 및 성과 관리 분야 등

2 감사 결과

□ 감사처분 총괄표

구 분	징계	경 고	주 의	시 정	개선	통보	현지 시정	계	모범 사례
처분 건수	-	2 (개인 2)	6 (개인 1, 부서 5)	-	-	9	-	17	-

□ 감사처분 목록

번호	제 목	처분종류	부 서
1	APEC기후센터 연구수당예산 편성 및 집행 미흡	통보	○과
2	연구장비 유지보수용역 연장계약 부적정	경고(2명) 주의(1명)	□과 ○과
3	연구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 계약관리 부적정	주의(부서)	□과 ○과
4	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 작성방법 부적정	통보	○과
5	APCC 기후정보서비스 종합만족도 조사 및 응답률 처리 미흡	주의(부서) 통보	○과 ㉠과 □과 ☑과 (국립기상과학원)
6	근무성적 평가 기준 등 불명확 및 평가서 등 작성 부적정	통보 주의(부서)	○과
7	가상사설망(VPN) 관리 부적정	주의(부서) 통보	□과 ○과
8	내부 규정 및 지침 미비	통보(4건)	○과
9	임원 등에 대한 명절 선물 지급 부적정	주의(부서)	○과

【 문제점 】

- APEC기후센터는 매년 ‘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(1334-301)’ 사업 연구 개발계획서 협약을 추진하면서 출연금 집행예산 중 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의욕 독려를 위한 연구수당 예산을 최대 20%로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음
- 그러나, APEC기후센터의 최근 3년간(’17~’19년) 연구수당 집행 이월액이 3년 평균 209백만 원이며, 2019년에는 최대 집행 후 잔액이 150백만 원으로 매년 편성한 금액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월하거나 불용하고 있음
- 그 사유로는 APEC기후센터가 연구수당을 최대비율로 편성하고 있으나, 실제 연구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(’17년 A등급, ’18년 A등급, ’19년 A등급)만을 받았고, 탁월(S)을 받은 적은 없어 매년 잔액이 발생하고 있음
- 그 결과, 2017년 이후 매년 약 26%의 예산 잔액이 발생하여 이월하거나 불용하고 있어, 다른 비목에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출연금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함

【 처분요구 】

- APEC기후센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독려와 성과창출을 위한 목적에 맞도록 연구수당 편성 비율 계상이나 연구성과 평가등급 지급률 등을 현실화하여 연구수당 예산집행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(통보)

【 문제점 】

- APEC기후센터는 2019년도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연구장비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재조정 등과 연계하여 2020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회에 걸쳐 연장하였음
- 「용역계약 일반조건」에 따르면 용역항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변경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변경계약이 아닌 연장계약으로 체결하였음
 - 그 결과, 계약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단순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용역대상 장비의 물량변동(33억 원→20억 원)에 따른 유지보수금액의 변동도 발생하여 최초 계약 시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보다 약 600만 원이 추가 산정되었음

【 처분요구 】

- 연구장비 유지보수용역의 계약변경 또는 연장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합리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·감독을 요구하고,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 및 주의 촉구 (경고, 주의)

【 문제점 】

- APEC기후센터는 2017년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2천만 원 이상 연구장비 14건을 도입하고 매년 전산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의 통합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
- 「용역계약 일반조건」 제4조(계약문서)에 따르면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에 해당하고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문에 대한 대가 지급시 적용 기준으로 효력을 가지고 「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」 제5조(용역수행)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
- 그런데, APEC기후센터는 연구장비 구매사업 14건, 유지보수사업 8건 총 22건 중 21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산출내역서를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받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음
- 그 결과, 계약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

【 처분요구 】

- 관련 법규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받아 계약의 변경이나 연장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·감독 철저를 요구하고, 관련 부서에 주의 촉구 (주의)

【 문제점 】

- APEC 기후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위탁연구과제 5건을 수행하면서 제안요청서에서 **연구비 소요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** 모든 입찰자가 입찰제안서에 연구비 소요명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였음
- 계약예규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」에 의거 가격투찰금액은 개찰 전까지 비공개 하도록 정하고 있음. 그런데 위탁연구과제 5건 중 4건은 공고된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고, 1건(기후정보 활용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)은 **가격투찰금액(49,000천 원)으로 연구비 소요명세서를 작성하여** 입찰제안서에 금액이 공개되었음
 - 그 결과, 입찰제안서 기술평가 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

【 처분요구 】

- 제안요청서 작성 시 연구비 소요명세서에 대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계약체결 후 제출받는 산출내역서와 구분이 명확할 수 있도록 개선
(통보)

【 문제점 】

- ‘APCC 기후정보서비스 종합만족도’는 ‘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(1334-301)’ 사업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3가지 중 40%를 차지하며, 당해 연도 서비스 사용자 및 프로그램(워크숍, 포럼 등) 참가자, 협력관계자 등 약 1,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산출하겠다고 정하고 있으나, 실제 설문 대상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었고, 응답자는 약 200명이었음
- 또한, 2017~2018년 설문조사대상자는 당해연도 워크숍 등의 참석자 외에 다른 연도의 참석자도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고, 2019년 설문조사대상 명단에 포함된 기상청 전·현직 직원들은 부서가 현행화되지 않았음. 그리고 설문조사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할 APEC기후센터 직원들의 명단도 포함하였음
- 그 결과, 2013년 설문조사 대상자가 2018년까지 매년 설문조사에 응답하며 설문의 실효성을 되묻는 사례가 발생하였고, 설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명단이 포함되는 등 만족도 조사의 기초가 되는 조사대상 명단이 부실하게 관리되어, 설문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

【 처분요구 】

- 아태지역 기후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문조사명단을 관리하고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 (부서 주의)
- 서비스 품질향상과 신뢰도 높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위해 응답률 제고 방안 강구 및 관리 감독 강화 (통보)

【 문제점 】

- 근무성적 평가 시 평가 기준은 원장이 피평가자의 업무 특성상 평가그룹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신설(2019. 11. 8.) 하였으나
 -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,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에 실장 직무대행자인 팀과장을 “본부장/실장” 그룹의 평가에 동일 그룹으로 평가하였음
- 또한, 피평가자 그룹별 평가등급은 4단계로 구분하여 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(2019. 11. 8.)을 하였으나
 - 원장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, 근무성적 평가시 원장이 평가등급 4단계 인원 비율 범위를 벗어나 평가등급을 조정하였음
- 그리고, 2019~2020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가 시 평가자, 피평가자 등 서명 33건을 누락 하였고, 평정표의 취득점수를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건이 37건, 연필로 기재한 건이 2건으로 총 72건이 부적정하게 작성 및 관리되어 있음
 - 그 결과, 근무성적평가그룹 대상이 주관적으로 선정되어 평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, 직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및 관리가 부적정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음

【 처분요구 】

- “평가 기준” 및 “평가의 단계”를 원장이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(통보)
-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 시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및 관리를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부적정하게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(부서 주의)

【 문제점 】

- 원격근무자에게 보안 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받고, 직원 임무에 부합한 접근 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접근 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,
- 원격근무 시행에 따른 보안성 확보 접근권한 부여 등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지 않고, 유선으로 VPN 사용 신청 후 이메일로 “VPN 실행 파일과 접속 계정·비밀번호 현황 등 자료”를 받아 접속 가능한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었음
- 그 결과, 내부전산망 원격접속에 대한 보안성 확보 조치도 없이 운영하고 있고, 기관부여 19개 계정 및 비밀번호는 신청자에게 공개하여 접속하도록 하고 있어 보안위험에 노출 우려가 있음

【 처분요구 】

- 내부전산망 원격접속에 대한 보안성 확보 조치도 없이 가상사설망을 운영하여 보안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(부서 주의)
- 내부전산망 원격접속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하고 가상사설망 관련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「가상사설망(VPN) 관리 지침」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 (통보)

【 문제점 】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고유식별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나, APEC기후센터의 「보안업무규정」 [별지2호] 서식은 **외부 출입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여**,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음
- 내부 규정인 「회계규정」 제28조제2항은 센터의 고정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, **자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을 지침으로 정하지 않은 채** 자산관리대장에 품명·취득일자·취득단가·사용위치 등만 작성·관리하고 있어, 재물조사 등 실제 자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수행되지 않고 있음
- APEC기후센터는 「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지침」의 [별지2호] 서식으로 직원의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있으나, 동 서식은 해당직원의 성명·출장일시·보유 마일리지·사용내역·잔여 마일리지·미사용 사유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신규발생 마일리지 기입란이 없으며, 출장 건별로 발생 순서에 따라 전 직원의 마일리지를 통합 작성하여 **공무 항공마일리지의 개인별 누적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**
- APEC기후센터 계약담당자는 학술용역 경쟁입찰 집행 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기술평가점수에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나, APEC기후센터 내부지침인 「**학술용역 경쟁입찰 내부 지침**」 제8조는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선정에 **가격평가 점수가 반영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**, APEC기후센터 계약담당자의 법령 등을 준수한 행위가 오히려 내부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

【 처분요구 】

- 「보안업무규정」 [별지2호] 서식을 주민등록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내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 (통보)
- 관리대상 자산의 범위, 취득 및 처분 절차, 내용연수, 재물조사, 손·망실 처리 등 자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지침 제정 (통보)
- 「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지침」 [별지2호] 서식에 신규발생 마일리지 기입란을 추가하고 보유·사용·발생 마일리지의 개인별로 누적관리 되도록 지침 서식 개정 (통보)
-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가격평가 점수까지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「학술용역 경쟁 입찰 내부 지침」 제8조 개정 (통보)

⑨

임원 등에 대한 명절 선물 지급 부적정

○과

【 문제점 】

- APEC기후센터는 내부 규정인 「복무규정」 제37조제1항에 근거하여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해 연 2회(설, 추석) 명절 선물을 구매하여 지급하고 있음
 - 그러나, 직원뿐 아니라 임원 및 전임 의장·원장·이사장 등 외부인사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, 위 규정의 지급목적인 직원의 후생복리에 부합하지 않음

【 처분요구 】

- 「복무규정」 제37조제1항의 지급목적에 따라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명절 선물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련 부서에 주의 촉구 (부서 주의)